

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년 9월 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금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9월 4일)

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(2023. 5. 16. 공포 및 2024. 5. 17. 시행)에 따라 “국가유산(구 문화재)”에 대한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
 - “문화재” → “국가유산”(안 제1조부터 제3조)
 - “문화재” → “문화유산”(안 제4조)
 - “문화재청장” → “국가유산청장”(안 제4조)

- “문화재보호구역” → “국가유산 보호구역”(안 제5조)

○ 인용조문 정비

- 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안 제4조)

- 「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(2023. 5. 16. 공포 및 2024. 5. 17. 시행)에 따라 “국가유산(구 문화재)”에 대한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※ 국가유산 체제 전환

-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‘재(財)’를 과거·현재·미래가치를 포함하는 ‘유산(遺産)’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
- 유네스코 유산체계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분류체계 재정립

현행 용어			변경 용어		관련법
문화재 「문화재보호법」	유형문화재		국가유산 「국가유산기본법」	문화유산	「문화유산법」(개정)
	민속문화재			자연유산	「자연유산법」(제정)
	기념물	사적지 등		무형유산	「무형유산법」(개정)
		명승, 천연기념물 등			
무형문화재					

○ 주요개정사항

- 명칭변경 : “문화재” → “국가유산” 또는 “문화유산”으로 변경

- 인용조문 현행화

- ▶ 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- ▶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→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
- ▶ 「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

○ 조례 정비대상 : 총 5건

연번	구분	자치법규명	조항	개정내용	소관부서
1	조례 (5)	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	제2조	· 문화재 → 국가유산	민원감사담당관
2		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	제2조	· 문화재 → 국가유산	부 동 산 정 보 과
3		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	별표 1	· 문화재 → 국가유산	도 시 계 획 과
4		자연환경보전 조례	제13조	· 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· 문화재 → 문화유산	공 원 녹 지 과
			제14조	· 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· 문화재청장 → 국가유산청장	
5	구세 감면 조례	제2조	· 문화재 → 국가유산 · 「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· 문화재보호구역 → 국가유산 보호구역	세 무 1 과	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